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02回(定例會)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7月3日(月) 11時01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審査된案件

1.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面
4.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鐘路區廳長 提出) 25面

(11時01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제3대 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 본 위원회 활동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으로 있는 1년여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택에 오늘로써 공식적인 소임을 무사히 모두 마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한 안전이 가장 많은 본 위원회에서 안전 심사는 위원님들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고 심도 깊게 처리하여 그야말로 의회의 위원회 제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폭넓은 수요와 다양한 요구가 표면화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하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맘껏 열심히 일한다면, 머지않아 지역 발전의 큰 성과와 보람이 우리에게 안겨 줄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안전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욱 중요하듯이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 6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이 2000년 6월 26일자로 회부되었으며 2000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2000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규약(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歲出 決算承認(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06分)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준높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온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0°를 웃도는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구정발전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때문에 종로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분야입니다. 소관별 국별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구행정 전반과 기획예산, 민원봉사, 문화진흥, 여권발급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봉사업무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 청소행정분야 등 주민복지와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건강관리와 1차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구민의 행정수요에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분야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577억 4,600만원으로 수납액 1,601억 4,900만원보다 24억 300만원이 적은 규모이며 그 중 지출총액 1,171억 2,300만원, 명시이월액 9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 49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1,200만원을 제외한 363억 5,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77억 4,600만원으로 1,17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9억 3,300만원, 사고이월액 49억 2,800만원을 제외한 347억 6,2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15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38억 4,2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1,238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입액은 333억 3,3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26.9%에 해당하며 이는 조정교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지방채 차입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8억 4,2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048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921억 7,000만원으로 87.9%

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관 국별 예산은 감사담당관 예산 5,200만원, 행정관리국 예산 672억 7,600만원, 생활복지국 예산 387억 8,800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 31억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총예산 현액은 1,061억 1,6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 총액은 921억 7,0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이 6억 8,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억 6,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18억 9,1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은 감사담당관 예산 5,2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672억 7,600만원으로 592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 6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종로문화의 집 보수공사 외 1건 3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0억 6,4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387억 8,800만원으로 329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동부여성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2건에 10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8억 2,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 6억 5,100만원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지출결정액은 4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외 2건에 4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4건에 2억원, 종로문화원 건물 개·보수비 3,600만원, 공공근로사업물품 구입비 2억 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내용은 세입예산 현액은 42억 9,800만원으로 수납액은 39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억 9,800만원 중 지출액은 39억 7,400만원입니다. 수납액 39억 7,600만원에서 39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반환금이며 불용액은 3억 2,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 현황 및 물품증감 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에 의하여 지난 5월 구의회에서 선임한 鄭泰淳議員님 등 세분의 결산감사위원이 5월 9일부터 30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하시는 동안 대표 위원이신 鄭泰淳議員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질 높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효율적이고도 알찬 예산집행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순세게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상회하여 지방채 원금 중 10억원을 지난 6월 15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운영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지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감사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되신 鄭泰淳 동료의원과 이선희, 김장환 두 분의 세무사께서 지난 5월 9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해서 1년간 집행한 결산서에 대한 질의가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거나 또는 예산을 각 과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은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못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하거나 또는 최초로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무산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결국은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도 주차장설치가 되고 있느냐 거의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느냐 특히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이나 시행규칙이나 령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령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다보니 실제로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만약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적어도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주차장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거의 경상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러는 주차장이 공시지가에 맞춰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 바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은 개정을 요구하라 이겁니다. 각 과에서 특히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후에 집행한다면 꼭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추경 때 민원실의 예산을 올린 것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정

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이 정도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은 불만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좀더 의회의 그런 뜻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겁니다. 금년 말에 예산을 심의하셨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리는 예산서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그 조정의 폭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서의 내용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종전의 의회의 관행을 보면 질문 한번 없이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결산을 잘 봐야 됩니다. 결산을 잘 봐야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부분에 어떤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금년도에도 보면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1,500억 이상 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담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회로서는 좀더 결산검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듣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실 예산의 집행 후의 결산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한 말씀만 묻겠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98년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우리 鄭泰淳議員께서 '99년도 결산을 맡으셨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자료 넘어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관리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과 세입의 부분에 있어서 '98년도와의 비교가, %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난다고 보십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세입이 얼마나 늘어났고 줄었고 또 세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줄었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세입·세출의 증감은 별도로 데이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문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아까 우리 安載弘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 안설명서를 보면 각각별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처리되고 있어요. 불용액이 118억 9,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좀더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명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문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생활관리국에서 감사 때도 얘기했고 추경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랑방 매점의 수익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그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의회에서 묵인해달라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결산검사서 의견에도 말이죠.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나와있던 말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좀더 투명하게 써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후생복지위원회 구내식당 기타 운영자금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회계내역이 투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은 사랑방 매점의 운영수

익 약 4,000만원을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묵인하라고 하는데 그 묵인하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한테 비리를 방조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후생복지 자금으로 5,000만원 가까이 집행하고도 5,000만원이 남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효자동 사랑방 매점이 적어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면 거기서 운영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安載弘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安載弘委員님께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다만 예산이 법규를 떠나서 현재 직원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에도 安載弘委員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의논하고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그게 왜 안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운영수익을 가지고, 즉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7,000만원이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매점이나 자판기, 팔각정 망원경 그 다음에 효자동 사랑방 매점수익을 가지고 식당을 충당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추석 때하고 설날 때 직원들 앞으로 나가는 비용을 5,000만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계수상으로는 5,000만원이 남게 되어 있잖아요.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

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내식당 운영비가 모자란다 7,000만원 가량이 모자라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5,000만원 가량을 쓰고도 5,000만원이 남는다면 부당하게 회계처리 되고 있는 사랑방 매점의 운영수익은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답변했어요? 총무과장이 답변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했지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세입처리를 하겠다는, 내년이면 내년, 금년이면 금년 추경 잡을 때 세외수입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委員長 李憲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효자동 사랑방의 재산이 시의 것이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식당의 가격도 점점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 알아보니까 시에도 여타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구청이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전에도 드렸습시다라는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직원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단 이 사항을 구청의 누가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후생복지위원회의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냐고 여쭙봤더니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약 7,000만원 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매점에서 판매수입이 3억 700만원이 난다고 했고 자판기 수입이 7,900만원 가량이 된다고 했고 효자동 사랑방 매점 수입이 4,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팔각정 망원경에도 1,570만원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수입을 가지고 무엇에 쓰냐고 여쭙봤더니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5,000만원을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생복지위원회의 운영 수입으로 연간 5,000만원이 지금 남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 자료는 운영결산 내역서를 보면 여기 말고 또 쓰는 데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安載弘委員님께서 이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5,000만원 중에서 이미 구정에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2,800만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내식당 가격도 또 올려야 되는데 사실 올리지도 못하고 현재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민행정부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오고 나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해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이것을 변화를 한다든지 보다도 이것을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벌써 5,000만원도 금년초에 구정 때에 돈을 2,8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협조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5,000만원을 썼으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논리에 맞지 않고 종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관례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라 이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명백하게 대답을 해야지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건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언제까지 해결할 거예요? 5,000만 원을 쓰는 6,000만 원을 쓰는 운영위원회 기금으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위원님! 점진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점진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산으로 식당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투명하게 위원님과 협조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협조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이 사랑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安載弘委員** 후생복지위원회의 기금으로 편성을 시켜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어때요? 기금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기금으로 하시겠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검토라는 게 어떤 게 검토예요? 그렇게 하는 게 검토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검토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저희들이 시청이나 타구에 알아본 결과 모든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청사 연금매점이나 여타 이런 것이 이러한 내부적으로 복지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제가 옳다고 하지 않는 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내년초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겠다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 사항도 의논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뭘 협조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사항,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는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安載弘委員** 두 가지네요. 하나는 후생복지위원회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는 방안과 2001년도에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사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安載弘委員**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行政管理局長! 답변이 말이죠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되었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하겠다, 현재 이러한 관례가 저희들도 사실상 제가 부임하고 나서 타구청이나 또 시청이나 다른 이러한 식당을 하는 데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꼭 부러지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은 이미 구정 때에 2,8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은 지금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생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행정관리국장이 기왕에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거야 운영위원회의 소관 이니까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계속 부단히 답변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잘못되어 온 관행이 지금도 이 시점에도 목인이 되어야 되고 위원이 방조를 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정을 해야 되고 또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여쭙보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행정관리국장이 소관 국장으로서 의회에 하는 대답이 굉장히 불성실하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행정관리국장이 사고를 전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때 결산을 승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安載弘委員이 정회 동의를 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2分 會議中止)

(11時5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사실 사랑방 매점에 대한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실 '99년도에도 그쪽에 예산이 의외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보면 우리 구세가 들어간 게 얼마나 되냐면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이 3,46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매점 그 자체와 관련지어서 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구 예산이 2000년도에도 역시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서 적어도 구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후생복지위원회의 운영에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것은 그게 만약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논리라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죄다 적어도 직원 후생의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관례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적어도. 그러면 '97년, '98년, '99년 이전부터 구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서 세입이 생기는 것은 매점에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 매점 수입이 후생복지위원회의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담당과장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자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러면 의원으로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것을 고쳐나가시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냥 이제 지금 현재 이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안건만 처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제가 들었어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건 처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그 답변 내용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安載弘委員님께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효자동 사랑방 수익 건에 대해서는 安載弘委員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방 수익에 대해서 또한 이 구내 식당 등 후생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연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잠깐 거기에 보충 질문을 제가 하죠. 효자동 사랑방 매점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은 여러분들께서 직원들 후생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 때

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자라는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도 나왔고, 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볼 때 행정관리국장님이 직접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입니까? 아십니까? 결정할 사항이 이 자리에서 결정해질 수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러니까 시민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왜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왜 위원들하고 결정해 가지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같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정책회의에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책회의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것은 모순된 얘기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설날 연휴 같은 때 추석 연휴 같은 때 교통편의라든지 또는 직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직원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십니까? 후생복지사업 자체가, 그렇다면 그 지출되고 있는 금액하고 늘어나는 금액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安載弘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왜 예산을 거기에서 효자동 사랑방 매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예산이 8천몇 만원이 잡힌단 말이예요?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은 적자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간파하시고 감지하셔서 참고하셔서 가지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절대 대답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대책회의에 넘기셔서 그것을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보충 질의를 마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또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의 입장을 정리를 한 연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연후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답변은 성실하게 한 걸로 인정을 하고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내식당하고 팔각정 망원경 문제 또 효자동 사랑방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룰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에 어느 분이 하더라도 시정이 안되면 똑같이 정례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내식당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영등포구청 구내식당도 가보고, 서초구청도 가보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맥락이더라구요. 아예 영등포구청 같은 데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씩 경비를 지원해주고 타 구청은 1억까지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것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료위원이신 安載弘委員께서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항상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결산검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면 어떤 개선된 사항이 대안이 나와서 그 때는 이렇게 해서 시정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좀더 국장님과 담당부서 직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鄭泰淳**委員 발언은 질의성이 아니고 토론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어요. 또 특히 오늘은 **鄭興鎭** 區廳長께서 여러 위원님들을 위해서 점심을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잠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13時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의 조례(안)은 모두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2. 서울特別市鐘路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 活用促進을위한 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

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3時34分)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 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안녕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입니다. 평소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규정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김포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당면과제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로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6월 21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자원화 등에 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즉 가열에 의한 건조시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대폭 강화했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시 즉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시가 되겠습니다.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40%미만으로 신규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즉 신

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용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즉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즉 구청장은 폐기물관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즉 1년에 두번 이상 지도 점검토록 신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은 첫번째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둘째 식품접객업 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 및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셋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넷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무대상 업소현황은 총 653개로서 배출량은 2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단급식소가 68개소 5톤, 음식점소가 576개소 13톤, 대규모점포가 1개소 1톤, 관광숙박업이 8개소 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관련법규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

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입니다. 개정 배경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며 2000년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별 규격과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구민 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별 규격의 가격을 2ℓ, 3ℓ를 추가하고 2ℓ부터 30ℓ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규격봉투 용량을 세분화하여 구민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

(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6월 21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바로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에 의류, 신발, 가방류, 장관류를 추가하고 음식물류는 삭제

하여 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규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및 규격을 세분화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5ℓ, 10ℓ, 20ℓ, 30ℓ 4종이었으나 여기에 2ℓ, 3ℓ 두 종류를 추가해서 총 6종류로 세분화했고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종전에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해서 5ℓ, 10ℓ, 20ℓ, 30ℓ를 제작토록 신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배출량은 총 100톤으로서 가정에서 31톤, 업소에서 69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가 25톤 25%가 되겠고요, 미처리 바로 지금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용량이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작년 8월 9일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리문화권인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아 배출단계에서 수집, 운반 매립시 오수 및 악취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분리 배출시 규격봉투의 용량이 너무 크면 배출시까지 장기간 보관하게 되어 부패로 인한 악취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2ℓ, 3ℓ 등 소형봉투를 제작 공급함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이 분리 배출하더라도 수거 및 처리체계가 미흡할 경우 분리배출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朴鍾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같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보시면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가격에서 차이가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같은 가격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같은 가격대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문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일반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톤당 1만 6,300원인가 얼마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저쪽 강동구하고 계약해서 버릴 때는 6만 1,000원인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3배 내지 4배 되는 가격인데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이 같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고 그리고 음식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관리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간에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과 일반봉투 가격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나 5,6가 지역, 창신동 이 지역을 보면 전부 의류상가를 끼고 있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품업자가 많아요. 제품업자들에게서 나오는 쓰레기라는 것은 가벼운 솜, 형겔조각인데 이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가격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제도를 연구해서라도 음식쓰레기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이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5톤 정도는 기이 공동주택과 감랑의무사업장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

지 75톤인데 그 중에 50톤이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톤은 일반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 담아서 내실 때 그런 가격대하고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로 하려고 합니다. 용기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로 버릴 때는 걱정한 가격을 저희가 계산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가에는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음식물쓰레기라도 분류를 해서 내지 지금 가격을 차별화를 두게 된다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버릴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가격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면서 다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를 하면 차별화를 했을 때 그냥 일반 까만 봉투같은 데 담아서 가지고 일반쓰레기봉투에 감춰 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 나오는 데 대한 대책을 특별히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축사에다가 그거를 제공할 때 우리 구 운반하는 사람들이 운반을 해주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호텔같은 데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고 차량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다가 돼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거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활용 차원에서 쓰레기를 옮기는 구청에서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까지 물량을 옮겨다준다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고 축사에 이용되리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음식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운반을 해주고 있는지 그 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 鄭倫漢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朴鍾植委員

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이 재활용 차원에서는 그렇게 축산농가에서 직접 와서 무료로 수거하고 자기들은 이윤을 얻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단은 음식물 양이 그 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어느 음식점 들러 가지고 괜찮은 음식들 비공식적으로 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 체제상으로 그렇게 운반해주고 그렇게까지는 할 실정이 안되고 단지 몇 톤 가지고 우리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저희 비용상에도 타산이 안 맞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그것을 어느 한곳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논의가 되었던 강동구에 있는 시설이나 이후로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사료화 시설이 나올 때 그쪽으로 어떤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차량 같은 것들도 변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적재하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해나가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대책을 갖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지금도 대형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를 직접 수거해가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음식점에서 돈을 주고 수거해가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음식물 수거해가는 자 입장들이,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주민이 묻던데 수분을 제거하는 압축기가 가정용이랄까 저렴한 압축기가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수분 제거하는 압축기 같은 것 깻묵처럼 딱 짜서 버릴 수 있는 압축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냄새를 유발시키고 불편한 사항이라 옛날에 짬순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돌려서 물기를 빼가지고 하는 음식점

이 몇 있는데 과연 소형업소같은 데서 그것을 돌려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고충보다는 그냥 돈 주고 배출하는 것이 편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배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규제가 강화가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처리시스템 자체에다 넣어서 운반을 해주고 물기가 있든 없든 와서 그 부피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비용부담을 자기들이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맡겨 가지고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기본 어떤 폐기물관리법의 어떤 입법 제정자들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朴鍾植委員 우리 집 근처에는 예식장이 공교롭게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예식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나온 음식쓰레기가 아마 한 15톤짜리 하나씩은 나올 거예요. 그런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특히 건축자재 쓰레기같은 것, 무슨 수리하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같은 것이 무단투기자들을 근본적으로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 옆에 연지공원에는 요즘에는 덜합니다마는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건축자재 쓰레기를 야간으로 버리고 갔어요. 하도 화가 나서 한번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직원하고 막 뒤져봤더니 전화번호가 나오고 화주가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주를 찾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화주에게 벌금 10만원 부과한 것으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주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는 분명히 낙원아케이트 밑에 있는 용달사에다가 20만원을 주고 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가달라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쳤는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 것입니다. 전화번호까지 확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라고 하니 처리가 미약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부구청장실에 들어가서 부구청장님이 계

시지 않아서 메모를 해놓고 나왔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용달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종로지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통관계, 불법주차관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하니까 좀 교통지도과하고 합세를 해서라도 그 당사자를 꼭 찾아내서 벌금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부과를 시키든가 앞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용달사나 영업인들이 상인들이 그렇게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메모를 해서 적어놓고 왔더니 나중에 알고봤더니 결국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돈 20만원 주고 치우라고 부탁한 화주한테 벌금 10만원 매기고 말았어요. 본 위원이 어느 용달사까지 확인해 가지고 구청에다 알렸는데도 귀찮으니까 조사조차도 안 해보고 그냥 동사무소로 바로 내려보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화주한테 벌금 10만원 때리고 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무단투기가 근절되겠습니까? 상습적으로 그래요, 20만원을 받고 쳐주기로 해 가지고 싹고 가다가 김포까지 가기도 힘들고 또 돈주고 하니까 밤에 살짝 와서 공원에다 버리고 가는 악덕 상인들을 갖다가 우리 당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전사를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냥 돈 20만 들여서 한 화주한테 벌금 부과시키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무단투기 상습 상인들이 용달사들이 어떻게 없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구청에서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라도 더군다나 거기는 교통지도과에 꼭 약점을 갖고 있는 용달사니까 교통지도과의 힘을 빌리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안하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쉽게 편안하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종로구가 참 깨끗한 종로가 못되고 상당히 너저분한 종로로 서울시에서도 평가받은 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려면 우선 청소행정 이러한 사사로운 행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에,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폐기물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설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5ℓ 하고 10ℓ 개정(안)이 있지요. 그 가격이 20~30원 차이가 나는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타구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표를 주시던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清掃課長 鄭倫漢 거의 타구도 비슷하게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종전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종전가격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봉투가격하고 거의 같게 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劉燦鍾委員 거의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종로구와 관련해서 이 가격표가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는 타구의 그런 가격표와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가 첨부돼야지 이게 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거는 지금 생활폐기물 봉투가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劉燦鍾委員 거의 같은 거 하고, 정확하다 하는 데이타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건 따로 委員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가격인상 폭이 무척 크다면가 그래서 서민들에게 주름살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생활폐기물 전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피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무게로 계산해서 합니까? 이걸 나누는 게 수거할 때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생활폐기물용 배출하듯이 똑같이 봉투에다 음식물만 따로 내놓으면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무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봉투가 규격화되어 있습니

다.

○劉燦鍾委員 제 얘기는 생활용품이라면 가정에서 음식찌꺼기도 첨부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쓰레기도 첨부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라고 수거할 때 얘기할 수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劉燦鍾委員 쉽지 않을텐데요?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수거할 때 이거 음식물쓰레기니까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끌어서 확인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하고 색깔을 달리 한 다든지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출해주시면 그대로 수거토록 합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이 가격인상 건과 관련해서 타구에서도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을 조정해서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새로 신설한 가격 분은 기존의 생활폐기물봉투의 가격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이 지금 5ℓ, 10ℓ 해가지고 100원, 200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전용이 120원, 230원 이렇게 되어 있죠? 20원, 30원 차이가 나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사업장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기 20~30ℓ 봉투가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봉투도 10ℓ, 5ℓ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10ℓ는 20ℓ의 절반, 그리고 5ℓ는 10ℓ의 절반가격으로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3ℓ, 2ℓ 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5ℓ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용량에 맞춰 가지고 60원, 40원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劉燦鍾委員 수치가 틀리는데 왜 인상이 아니에요? 말로만 틀리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쓰레기봉투 5ℓ, 10ℓ 짜리 샘플도 보여주고 타구와 비교해서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가격도 좀 조사를 해보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전용 해가지고 대행업체만 살찌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종로구민의 주름살만 더 가는 것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돈이 몇 억씩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최소한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수치 모르는 사람 전혀 몰라요. 말이 20원, 30원이지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할 때도 사업장과 그냥 가정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보면 460원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정용 생활폐기물은 380원입니다. 약 8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든다면 사업장 개념을 적용해서 똑같이 460원이고 그전에 마찬가지로 사업장용 생활폐기물에서는 20ℓ 미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20ℓ 미만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넣으면서 기존의 가격에 어떤 합리적으로 10ℓ의 반 그래서 230원, 그 다음 5ℓ는 120원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가격을 증액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劉燦鍾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을 거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

라 한글이 이렇게 좋아요? 현행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압축기 등 뭐 '생활'자는 다 들어가 있네? 아, 이게 도토리 키 채가지 안 그렇습니까? 다 그게 그거지. 종로구민들에게 주름살 가게 하고 대행업자 살찌우기 하는 시책 같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사실

○**劉燦鍾委員**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전용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국어사전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것도 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압축기 이런 거 국어사전에 있나 봐요. 내 얘기는 이런 얘기는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委員님! 이거 보니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업체에서도 나오고 타구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적정가격으로 해서 올려주는 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애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였습니다. 이런 열린 행정이 앞서 가야지 가서 그냥 하루 전에 끝나니까 대충 집어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발력 있는 행정이 돼야지.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반드시 사전에 안내도 드리고 저희들이 정말 미리 통보해서 협조를 쉽게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지방자치는 조례가 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정말 질의 시작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東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선 우리 10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2항, 3항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 의 의견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동부지역, 창신지역에 그 동안에 우리가 직영을 했던 청소하시던 분을 우리가 다시 구에서 끌어안고 민간업자한테 대행으로 넘겨준 상태죠? 첫날부터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이전 중이라

○**李東奎委員** 그래서 민원이 좀 떨어졌다. 벌써 그거부터 삐그덕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노련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고돼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돼서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전에 최소한도 민간대행업자가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기타 대표급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은 어떻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점 같은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없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두번째로 2항, 3항에 대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劉燦鍾委員님이나 朴鍾植委員님도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과를 거칠 수 있는, 청소행정과를 예로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운반하고 재활용하고 나눠져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토론이 되고 거기서 여과를 거치고 난 후에 우리 의회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재여과를 거치고 토론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위원회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직은 없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하고 얼마 전에 미국을 견학 갔었습니다. 6개 주를 다니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비가 오는

과정에도 실제로 매립장에도 들어가 보고 재활용하는 또는 소각장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질의한 내용들이 주로 그거였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과정까지 온 단계가 무엇이나? 제일 중요한 걸 발견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들은 토론문화가 대단히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관리하는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즉,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의회 같은 데서 조정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 역할을 저마다 맡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만족스럽고 어느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주게 되고 그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 여과를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로 올라온다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벌써 몇 단계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또 심의하신 분들의 저기도 받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행시출신이고 우리 중로구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사람이었는데 보다 더 새로운 차원을 한번 뛰어넘어 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局長님하고 토론을 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 설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여과가 거쳐서 토론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를 설치해야겠다 한다면 그 부분도 조례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정해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가면 갈수록 나날이 이 쓰레기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과거 관습이나 폐습에 젖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악법이나 악습에 젖어서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 같이 간다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걸러지는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李東奎委員**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어느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가서 계속 결산심의가 열리면서 진행되는 사안에서 또 몇몇 만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깊이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회가 설립되고 한다면 심도있게 관련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깊이있는 논의가 있고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검토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시급해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여과를 거쳐서 우리들한테 조례개정해달라고 올려야 단계를 뛰어넘고 더 발전적인 얘기가 나오지 여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劉燦鍾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하셔 가지고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쓰레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생활복지국의 청소과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구예산 1억에 가까운 9,700만원을 들여서 아파트하고 초등학교에 음식물감량기기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예산 보조가 50% 해서 1억 정도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그게 시예산이 됐든 구예산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에 가까운

쓰레기 감량설비라고 그러니까? 기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13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게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부식도 강하고 이걸 우리 음식문화 때문에 그렇지만 염분도 많고 냄새와 소음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에 많이 보급했는데 실제로 저희 관내 쌍용아파트나 아남 이런 데서 사용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때 대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보급해주라고 그랬는데 현실에 와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쓰레기 조례(안) 중에서 폐기물조례 제10조제2항을 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 공동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뺐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사유는 뭡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게 가장 큰 주민의 불편사항이라 저희들도 사실 기기를 사용해보고 나서의 문제점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환경부 쪽에서 사용을 해보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소지가 있겠는데 지금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에 설비와 관련지어서 소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예산도 낭비되어 버렸고 또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을 적어도 뭐라고 그럴까 수분을 제거하고 수거해 가는 것과 그대로 놔두고 수거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감량기거나 시설을 없애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에서 삭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민원의 발생 우려를 고려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지금 만일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안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거기서 자체 위탁처리해서 음식물을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사항이라면 보관기간 동안 부패해서 나는 냄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감량기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직접 위탁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걸로 압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감량기기가 없잖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수분 처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차라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편안하게 수분을 제거하는 기기를 의무화시킨다면 그러한 기기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이나 집단주택에 기기를 팔기 위해서 머리를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냄새도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기기를 개발해서 바뀌나갈 거 아닙니까? '97년도에 구매한 기계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신 게 냄새문제, 부식문제 그런 문제들이 '97년도에 발생해서 그 기기는 지금 용도 폐기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이런 기기설치를 의무화하면 누군가 그런 기기를 발명해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사 모든 제도나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고시, 공람·공고를 지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보다 폭넓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라면 설치감량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것을 삭제하기보다는 존치시켜서 개발하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논리고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실제로 그 감량기기를 구입해서 놓는 것과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서 수분제거를 한 후 다른 데로 또 넘길 때 돈이 들거든요. 이게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또 그렇게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할 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

야되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놓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걸 의무조항으로 부과한다면 그런 기기가 개발될 소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이 그런 소규모 단위에서 감량을 한다기 보다는 이제는 좀 대규모 쪽으로 해나가는 걸로 정책이 결정 난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음식물쓰레기를 축소하는 방안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자치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떤 공동주택이나 집단적인 민원이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사는 주민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 청소행정 과정에서 암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좋은 행정을 편다 하더라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고 그 정책에 찬동을 안 해준다면 그 정책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볼 때 사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적어도 그런 시설을 의무화해놓는다면 자기 스스로 불편할 것이다 그거죠. 불편하면 자기네 집에서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덜 내놓을 것이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구청에서 수거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러한 비용이 자기 관리비에 포함이 된다면 최대한 축소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자체감량기기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치하게 해서 그 설치한 기기를 사용하든 말든 또는 그거와 관련된 관리비용을 물든 안 물든 쓰레기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될 것이다 그거죠. 만약에 그 기기를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관리비에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부과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나 구에서는 세금 받아서 거기에다 보조를 하고 있다구요. 요즘 발효토라는 것도 거저 주잖아요. 시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주는데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한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감량기기의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기본적으로 감량기기가 있고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기기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음식물을 버리면 그 음식물에서 자체 분해해 가지고 그대로 하수구에 흘러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그런 것도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사항으로 거기에 적절한 음식물만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염류함유량이 높고 그러면 기기자체의 부식도 있고 망가지기도 합니다만 또한 기기회사 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지난번에 이런 감량기기로 문제가 생긴 게 기기가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지만 그 업체가 순식간에 부도가 납니다. 부도를 내버리면 나중에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활용에 관련한 업체가 상당히, 지금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중소업체가 됐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잔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일부러 부도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업체들이 운영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 오히려 예산도 낭비될 소지도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게 수 백 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나 국가에서 믿고 밀어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발효흙 같이 어떤 파급효과가 적은 것도 나중에 발효흙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나중에 이게 발효가 끝나고 나서 처리문제가 토양오염이나 다른데 어떤 영향이 없을까 하고 어떤 분석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능한 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나가는, 거기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친 후에 감량기기를 삭제하자는 의견 결정이 나온 사항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게 가장 어떤 안전성 문제나,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음식물쓰레기는 일단은 감량이 우선 목표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청소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지금 정례회라 파장 분위기인데 저는 이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가 쓰레기처리 문제이고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토론시간에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보고 자체감량기거나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東奎委員님, 朴鍾植委員님 그 다음에 劉燦鍾委員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9월말 경부터 대행구역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3개 업체가 대행구역을 확대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들의 어떤 이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이거를 다 보지를 못했는데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청소기동반밖에 없잖아요? 지금.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물론 전지역을 종로구 전지역을 대행으로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 지역을 대행으로 못해주는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급사항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 또 우리 종로구 지역 특성상 시위시에 대처하는 방법, 또 특정지역 대처하는 방법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전 지역을 대행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이제 대행구역에서 안됐을 때는 응급으로 대처를 하고 또 그것이 장기화될 때는 서울시 각 구에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서로 응급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차, 2차적으로 응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安載弘委員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대행에 대한 계약상에 상호 교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협회 계약으로 거기에 가입으로 해서 응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계약서 11조에 환경미화원 임금이 되어 있는데 임금에 대해서 「을은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감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계약서상에 구청의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安載弘委員 저는 전적으로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찬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지역은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하여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개량하시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 집단주택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시간에 얘기를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安委員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좀 어떤 KS마크나 그렇게 믿고 쓸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아파트같은 지역이나 집단주택에 적극 권장하는데 물론 초창기 실험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실지 사용하다 보면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 개량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무사항으로 넣었을 때 집단주택에서 설치해 가지고 기능발휘를 못했을 경우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왜, 완전무결한 기기도 없는데 그런 걸 설치했다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 조항

을 삭제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0% 완전무결한 기기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넣어야죠.

○**安載弘委員** 고민이 거기에 있군요. 즉 말하자면 불가피하게 없애야 하는 고민이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조례나 관련법령에 그 조항이 폐지가 돼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우리 조례도 부득이 폐지되고

○**安載弘委員** 안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어찌면 집단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항의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조례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것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수고하셨습니다. **鄭泰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중조례(안)에 보면 현행에 신문지라든가 포장지같은 것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종이류 신문지하고 상자류를 물에 젖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문지나 포장지를 수거해서 집단 관리하고 나가는데 보면 처리할 때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량을 많이 나가게 해야 결과적으로 값이 많이 산출되는지 항상 이렇게 호스에서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 때문에 그런지 중량을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다 현장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거기에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물에 젖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하고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그런 일은 직접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민간업

자들이 수거하다가 자기들이 고물상에 넘길 때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가서 자기들 거래하는데 가서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주지대로 배출해주는 게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라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에 대한 영역이라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鄭泰淳委員** 그렇습니까? 업자들에 국한된 상황이기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소규모 자기들 동네에서 박스나 이러한 것 수거해가는 리어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물상에 팔 때 물에 적시기도 하고

○**鄭泰淳委員** 그러한 현장을 다반사로 목격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6시에 보면 생활정보뉴스인가가 나오는데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기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때문에 극찬을 받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 어차피 공무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창의나 착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데서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같이 받아들이고 공동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안을 우리가 창의를 못하고 한다면 방송을 통해서 직원을 한 사람 두 사람 현장에 보내서 현장확인을 해서 신속하게 우리 종로구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앞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지 주무부서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물론 행정은 하다보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좋은 시설이나 방법이 있다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외국에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외국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느 정도 이제 홍보성이 아니고 실지 공인기관에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우리한테 과연 이 방법이 옳은가 판단이 갈 때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오늘 방송은 국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고 또 그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은 그런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의 창의력, 착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안이 있고 어떤 타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가서 업자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런 알팍한 상업수단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하면 한꺼번에 사업성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추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알팍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러한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된다면 그런 것 우리 직원들이 방송사에 확인을 하셔서 현지에 가서 현장 답사 해가지고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페스티로폼 배출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중에서 신고조문대비표 거기에 보면 페스티로폼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위에 페스티로폼 나오죠?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적어도 크기를 작게 하거나 부피를 최소한 줄여서 쓰레기봉투에 넣어두면 수거해가는 그러한 내용이시죠? 맞죠?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安載弘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농수산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제 중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이러한 것은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

지 않아요.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판매자들에게 요청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전제품 구입할 때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정당하게 “이것은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합니다.

○安載弘委員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야 된다?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본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여기다도 알리기 때문에 가전제품사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수거를 안한다고 했을 때는 정당하게 수거를 안하면 이것도 신고를

○安載弘委員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게 건축용 스티로폼이 있다고요. 집을 철거하면 5톤미만은 건축물 폐재류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금 수거해가잖아요.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건축폐기물로 다 종합해서 아마 가져갈 겁니다.

○安載弘委員 나가는데 5톤미만까지는 구청에서 수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폐기물관리조례 저희들이 할 때 했다가 지금 또 문제가 돼 가지고 5톤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청이나 이런 데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규칙이 개정되고 그래서 환경 입법이 5톤미만으로 했다가 다시 개정돼서 옛날처럼 돼가는 상황입니다.

○安載弘委員 그것도 변했어요? 조례 심의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보고서 개정사항이라 필요해서 거의 다 하라고 시에서, 그러다 우리도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安載弘委員 개정 안되지 않았습니까?

○淸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때 개정을 했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5톤까지는 건축폐기물도 생활쓰레기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安載弘委員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굳이 자기들이 계약을 안하고 내놓으면 수거한다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5톤미만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봉투 이

용해서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하고 있는데 보통 업자들한테 말하면 바로 처리

○**安載弘委員** 건축물 폐재류 업자들이 현정부에 로비를 해서 폐지를 시켰나보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런데 구청에서 생활폐기물만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安載弘委員** 왜냐하면 작년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딱 들어가니까 청소미화원들이 신이 난 거야. 대개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매립지에서 1만 4,000원 받으니까 보통 2톤이나 3톤 처리하면 10만원이 넘어간다고요. 청소미화원들이 집을 고치거나 보수하는 집에 가서 직접 가서 계약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에 치워줄게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에 그렇게 해서 하더라구요. 그것을 굳이 저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순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페스티포름 건축과 관련된 것이 없어서 나는 먼저 조례개정할 때 그 내용이 유효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과장 답변대로라면 건축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일정량 미만은 환경미화원이 수거해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李東奎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다 같이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하며 어떻겠어요? 위원회 설치를 하는 그 부분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委員長 李憲九** 그거야 李東奎委員님이 토론시간에 자기 주장만 얘기하면

○**李東奎委員** 그런 방향으로 즉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계속해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조례개정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가능하면 마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李東奎委員께서 토론과정에서 아까 질의시간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러한 조례를 걸러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어떤 조례, 비록 이 청소이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가 일단 넘어오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국·과장님들이 한번 정도는 걸러오지 않겠느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다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한발 더 올려서 李東奎委員님은 그런 것을 하나의 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토론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각종 조례나 규칙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라는 것은 아마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합쳐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문제, 규격봉투 문제, 봉투 가격문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남발한다는 것은 조

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건지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우리 일반 생활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전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것이 법에 어떤 저촉을 받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토의하시고 토론해서 내려오는 여과과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의회에 내려오면 토론문화가 정착이 잘 되어가는 거죠. 한번 여과를 거쳤고 또 여기 와서 우리하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느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알고 싶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도 나오셔야 되고 의원님들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늘 여기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의원 입법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제가 조항을 검토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시죠.

○李東奎委員 오늘 여기다 삽입을 하지 말고 별도로 추후에 하자는 거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委員長 李憲九 건의니까 건의를 받아들이면 되고 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55分 會議中止)

(15時0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제10조제2항의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기 위한」 이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로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흥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鐘路區廳長 提出)

(15時08分)

○委員長 李憲九 의사일정 제4항 홍제, 불광천구역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평소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와 추진과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서울시를 관류하는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불광천 등 4대 지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3월 안양천 유역의 11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99년 9월 홍제·불광천 유역의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포함하는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을 서대문구를 주관으로 서울에서 지정하여 추진토록 재차 권유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11월 4개 구 실무 담당회의에서 협의회 추진일정을 정하고 서대문구에서 작성한 협의회 규약(안) 초안에 대한 각 구의 검토 의견을 거쳐 2000년 3월 4개 구 과장회의에서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각 구의 의견에 대한 세부 검토 및 대상 등을 조정하여 규약(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은 홍제·불광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입니다. 본 규약은 총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규약(안)

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대하여, (안) 제18조에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결의사항의 처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 문제를 공동으로 운영·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참고로 홍제·불광천 유역의 3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30일 현재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은평구는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규약(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7월 중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고시를 한 후 실무국장 회의를 거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본 행정협의회에서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홍제·불광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폐수배출업소의 합동단속 및 오염사고 공동대처,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지역환경보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질관리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6월 14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4개 자치구가 수질환경개선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은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안 제10조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하천 관할구역 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토록 안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안)을 작성한 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현황입니다. 불광천은 우리 구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홍제천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원지는 종로구 구기동이며 총 길이는 12.3km로 이중 우리 구 관내가 약 2.8km가 되겠습니다. 수질현황은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평균 9.1로서 최대는 11월에

24.2ppm, 최소는 6월에 2.6ppm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천수질 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이 BOD 1 이하, 2등급이 BOD 3 이하, 3등급이 BOD 6 이하, 4등급이 8 이하, 5등급이 10 이하 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 특성을 말씀드리면 상류지역은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류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특성은 상류는 주로 암반층, 하류는 모래, 자갈로 형성된 자연하천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타 구 추진현황입니다. 마포구에서는 2000년 4월 1일자로 규약(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쳤고 서대문구는 2000년 5월 27일 규약(안)이 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은평구는 현재 구의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법규는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입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홍제·불광천유역에 위치한 4개 구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개선 등 지역 환경보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하천의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4개 구청이 동시에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포구나 서대문구는 이미 규약(안)이 의회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시면 어떤지 질의가 있으시면 할 수 없고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말씀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이 규약은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 구기동은 유일하게 종로구에서 하천이 오픈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환경과에서 2000년 업무계획이나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하천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행정감사시에 이렇게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이렇게 내놓고 생활복지국에 환경위생과 분야를 보면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홍제·불광천유역환경협의회규약을 올린 것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 저는 우려를 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98년도 초에 의원이 처음 되어서 구정질문을 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원지가 되니까 이 발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4개 구청 5개 구청과 협의해서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부터 개선되어 가면 저기 난지도 종말처리장까지 이르는 마포구까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취지에는 우리 李東奎委員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적어도 유일하게 하천이 열려 있는 구기동 구기천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제천이 계속 이어지는데 세검정자 옆에 같으면 홍제천 맑은물 살리기운동이라는 플래카드가 아직까지도 붙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했는데 그때 한 것이 뭐냐하면 오물 줍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참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환경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와 협의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홍제천의 일부분과 평창동의 일부분이 분류하수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토목과에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분류하수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장화신고 날짜 잡아서 일부러 소모행사적인 일을 안해도 물은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구간으로 봐서 약 1km 정도 됩니다. 1km정도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분류하수관로 시설만 한다면 정말 종로는 자랑할만한 것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종로구 구기동이나 평창동을 가봐라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 라고 말이죠.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安載弘委員은 지역 사업을 여기서 다하는군요.)

○安載弘委員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무슨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비만 오면 한번 과장님! 토요일 오후에 가보세요. 정말 물이 좋은데 요즘같이 갈수기에는 정말 오염되어 갖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특히 신영동, 부암동 관할 구역이 됩니까마는 그쪽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이면 해당과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6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
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2회 서울특별
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
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時24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劉燦鍾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啞宅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旅券課長 任炯正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李漢龍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